[서식 예]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



			재	심	사	청	구	L	서			ネ] 리기간 60일
청구인 (대리인)	①성 (상	명 호)	0	0 0	②주민	l등록t	<u> </u> 보호	1	11111-1111111		③근로 저 의 관		본 인
	④주	소	□□□-□□□ ☎ ○○○-○○○ ○○도 ○○시 ○○길 ○○번지										
결정을 받은자	⑤성	명	0 0 0			6	주민등록번호	111111-1111111					
	⑦주	소	& 000-000-000										
근로자	⑧성	명	0 0					⑨ 주민등록번호 11111			111111	1-1111111	
	⑩사업장명		○ ○ 석탄공사			11)	사업장소재지	ㅇㅇ도 ㅇㅇ시					
② 결 정 기 관 근로복지공단 (. 0 () 지계	\ }	(13)	결정년월일	20)00년	O 4	월 ○ 일		
④ 심사결정기관명			근로복	지공단) 심사 받은		2000	Э. С) O. OO. ¹⁶ 심		[정이 · 안 날 20	100	. 00.0.
① 심사결정기관의 고지 유무 및 내용			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 "기각"										
⑧ 청구취지 및 이유			(별 첨)										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													
2012년 〇〇월 〇〇일													
청구인(대리인)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													
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								
첨부서류: 1.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. 증거조사 신청서(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 한합니다.)						수	· 수 료 임 음						
※ ○]	※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.(뒷면 참조)												



※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청 구 인	경 유 기 관	처 리 기 관
8 I U	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 및 지사	노동부 심사위원회
청구서 작성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	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 및 지사 접 수 【절 재 (기관장)	노동부 심사위원회
	전 달 통 지	↓ 재결서 작성

청 구 취 지

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사장이 2012년 7월 6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사건의 경위

청구인은 ○○소재 ○○석탄공사 ○○광업소에 2012년 4월 30일 광산기계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2012년 5월 30일 12:00경 위 광업소 7편 적재 콘베이어 부근에서 원탄속에 섞여나오는 무게 20키로그램(실제 마른 상태의 무게는 8키로그램 정도이나 원탄 등 땅속에 묻혀 물이 베인 것은 최소한 20키로그램 이상이 됨)되는 갱목을 골라내기 위하여 허리를 굽혀 두손으로 들어 허리를 펴는 순간 갑자기 허리가 삐긋하여 통증이 와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요추5번선 추1번간 추간판탈출증, 요추 2-3, 3-4, 4-5번 추간판변형의 재해를 입었습니다.

- 2.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○○광업소가 직영하는 ○○의원 원장의 초진 소견상 퇴행성요추염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적 기왕증으로 판단한 소견서에만 의존하여 개인적 기왕증으로 판단 2012년 7월 6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.
- 3. 그래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년 7월 6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 분에 불복하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원처분기 관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12년 10년 29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.
- 4. 그러나 청구인은 퇴행성요추염이 있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, 원고 나이의 일반인에 흔히 나타나는 퇴행성요추염이 다소 기존하였다 하더라 도 그것이 순간적으로 발생된 이건 재해를 일으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 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근무하다 재해를 입을 당시 함께 일을 하던 청구외 박○○가 직접 목격한 바로도 청구인은 분명히 위 1항 의 사고경위와 같이 작업도중 허리를 다친 것입니다.
- 5.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년 7월 6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기 위해 이 건 재 심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

1.	요양불승인결정통보 및 불승인이유서	1통
1.	결정서 사본	1통
1.	재결서 사본	1통
1.	진 단 서	1통
1.	인 증 서	1통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위 청구인 ㅇ ㅇ ㅇ (인)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			Orkr (률구조공단			
제출기관	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 (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6조2항)						
청구기간	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(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6조3항)						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근로복지공단				
제출부수	청구서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조 내지 111조				
	・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(행정심판법 51조)						
	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						
	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. 다만,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						
	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						
 불복방법	・재결에 대한 행정소송(행정소송법 19조, 38조)						
1 2 7 6 日	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						
	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						
	•다만,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						
	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(행정소송						
	법 18조)						